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17
----------	-------

발의연월일 : 2026. 6. 23.

발 의 자 : 강명구 · 김미애 · 고동진
강대식 · 성일종 · 안철수
서천호 · 엄태영 · 구자근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시·군 및 읍·면·동에 대응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와 區·市(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郡 및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으로, “각각 이에 대응하여 特別市”를 “特別市”로, “와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을 “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로,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타 여건을 감안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區域안에 2個이상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第2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1個의 區·市·郡안에 2個 이상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를 두는 경우의 각 管轄 區域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④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個의 區·市·郡의 管轄 區域안에 2個 이상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있을 때에는 區·市·郡의 行政區域名 다음에 甲·乙·丙등을 붙여 표시한다.

⑤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 . <단서 삭제>

④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 . <단서 삭제>

⑤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 · 면 · 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⑥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각종選舉(全國 또는 市 · 道를 選舉區로 하는 選舉는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는 같다)에 있어 1個의 選舉區의 區域안에 2個이상의 區 · 市 · 郡選舉管理委員會가 있거나, 1選舉區의 區域이 2個이상의 區 · 市 · 郡選舉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選舉區의 選舉事務를 행할 區 · 市 · 郡選舉管理委員會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選舉區選舉事務를 행하는 區 · 市 · 郡選舉管理委員

-----둔다.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삭 제>

會는 당해 選舉에 있어서 그 選舉區안의 다른 區·市·郡 選舉管理委員會의 直近 上級 選舉管理委員會가 된다.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 ①

· ② (생략)

③ 區·市·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區域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의 選舉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중에서 國會에 交渉團體를 구성된 政黨이 추천한 사람과 法官·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6人을 市·道 選舉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다만, 政黨이 추천하는 委員은 選舉期間開始日(委託 選舉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 후에는 당해 區·市·郡 選舉管理委員會가 위촉할 수 있다.

④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委員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의 選舉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중에서 國會에 交渉團體를 구성된 政黨이 추천한 사람과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4人을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다만, 邑·面의 區域안에 軍人을 제외한 選舉權者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을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區域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選舉權者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⑤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委員이 될 法官과 法院公務員 및 教育公務員은 居住要件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法官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⑥ ~ ⑪ (생략)

⑫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期間開始日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후에 당해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政黨推薦委員의 推薦書를 접수한 때에는 第3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24時間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時間이내에 위촉

<삭 제>

⑥ ~ ⑪ (현행과 같음)

<삭 제>

하지 아니할 때에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이를 위촉하고 각 上級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投票日 또는 開票開始日 직전에 交替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投票日 또는 開票開始日 2日前에 당해 政黨의 交替推薦이 있어야 하며 投票日 또는 開票期間중에는 이를 交替할 수 없다.

⑬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2개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경우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開票事務를 보조하기 위한 補助委員은 選舉期間開始日 현재 國會에 交涉團體를 둔 政黨이 開票所마다 각 3人이내에서 추천한 者를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이 경우 政黨推薦補助委員의 身分保障에 관하여는 第13條(委員의 身分保障)의 規定을 準用하며, 그 근무기

<삭 제>

간·實費補償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5條(委員長) ① ~ ③ (생략)

④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副委員長 1人을 두며 당해 選舉管理委員會委員중에서 互選한다. 이 경우 勤務期間, 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다만,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공직선거법」 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2개이상의 開票所를 설치하는 경우의 選舉管理를 위하여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3項의 委員定數에 불구하고 開票所마다 地方法院長 또는 支院長이 추천하는 法官 1人을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副委員長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생략)

第5條(委員長)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⑤ (현행과 같음)

第7條(政黨推薦委員의 常勤) 區 ·

市 · 郡選舉管理委員會의 政黨
推薦委員은 選舉期間開始日 또
는 國民投票案公告日로부터 開
票終了時까지 常勤할 수 있다.

第8條(委員의 任期) 各級選舉管理

委員會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다만, 구 · 시 · 군선거관
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
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第11條(會議召集) ① · ② (생
략)

③ 區 · 市 · 郡選舉管理委員會
와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
의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
闕位 또는 事故가 있을 경우
委員長 · 副委員長 또는 臨時委
員長을 互選하기 위한 會議召
集은 事務局長 · 事務課長 또는
委囑幹事가 이를 代行한다.

第15條(事務機構등) ① ~ ⑩ (생
략)

⑪ 區 · 市 · 郡選舉管理委員會
에 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두며
局長은 4級, 課長은 4級 또는 5

<삭 제>

<삭 제>

第11條(會議召集) ① · ② (현행
과 같음)

<삭 제>

第15條(事務機構등) ① ~ ⑩ (현
행과 같음)

<삭 제>

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
한다.

⑫ ~ ⑰ (생략)

⑫ ~ ⑰ (현행과 같음)